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22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구자근 · 김선교 · 박준태
김승수 · 최은석 · 박성민
정동만 · 강명구 · 유상범
최수진 · 정점식 · 강선영
김도읍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 나라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기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개발,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산업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는 미흡하여 산업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우수 산업기술인의 양성, 연구개발, 기술 혁신 및 사업화 등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인 중에서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자긍

심을 고취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산업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산업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함(안 제7조).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하여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산업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 마.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산업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산업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인”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이하 “산업기술”이라 한다) 분야에서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사업화 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업기술유공자”란 산업기술인 중에서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연구기관 등”이란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사업화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산업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산업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사업화 활동 등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기술유공자의 책무) ① 산업기술유공자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산업기술유공자는 산업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의 원칙과 기준
3. 그 밖에 산업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2.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사업화 활동으로 특정 산업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산업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산업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산업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① 산업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업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산업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산업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2. 산업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4. 산업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5.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6. 출입국 심사 우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한다.

②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산업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① 정부는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 조사·연구
2.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3. 정부의 산업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4. 산업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5. 산업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6.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산업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